

지급지연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함

상담실 백종훈 차장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현금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회사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거래대금에 대한 결제기한을 넘기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기한이 경과된 대금결제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결제기한내에 대금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거래 당사간에 합의하여 지체상금을 주고받기로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결제기한을 연장해주고 받게 되는 지체상금의 세무처리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아니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님

통상 대금결제의 지연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은 상호 합의된 일정금액을 주고받거나, 지연기간에 약정된 이율이나 요율을 적용한 금액을 주고받게 된다.

지체상금은 거래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그 세무처리가 달라지는데,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금전소비대차(자금대여)로 전환된 경우에는 이자소득(받는업체)이나 지급이자(지급업체)로 처리하며, 금전소비대차로 전환되지 않고 단순 지연에 대한 보상 성격의 금액이라면 이자소득으로 반영하지 않고 영업외손익으로 반영한다.

즉, 대금의 결제기한이 경과된 이후에 거래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당 대가를 대여한 것으로 전환하고 지급받는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이자를 지급하는 사업자는 이자지급시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로의 전환이 아닌 지급지연에 따른 단순한 지체상금은 이자소득이 아니므로 지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며 또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제9의5호의 규정에 의해 지출증빙수취특례가 적용된다.

♣ 서이46013-11968, 2003.11.14.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의 지급기일을 연장하여 주고 추가로 지급받는 금액은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그 외상매출금이나 미수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외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지체상금의 지급의무 확정시점의 손금으로 반영

법인세법상 사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과하는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은 손금불산입 대상인 별금·과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사업과 관련된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지체상금(구상권 행사가 가능한 지체상금은 제외)을 지급하였다면 손금산입이 가능하므로 지체상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반영하면 된다.

지체상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함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재화·용역공급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 ⑤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1.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 주는 금액
 -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되거나 훼손되거나 멸실한 재화의 가액
 - 4.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5. 공급에 대한 대가의 지급이 지체되었음을 이유로 받는 연체이자
 - 6. 공급에 대한 대가를 약정기일 전에 받았다는 이유로 사업자가 당초의 공급가액에서 할인해 준 금액

♣ 서면3팀-699, 2008.04.02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 당해 연체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받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